

『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세채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【별표 16】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검사장이 제외되어 있음
-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차량검사를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의 및 계획적인 도시계획 설치 등의 이유로 검사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【별표16】하목에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라목(검사장)을 삽입

4. 참고사항

-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 -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
- 정비공장에서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자동차 검사만 실시하는 검사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